

정관 중요사항의 변경 보고

※ 법 제418조제2호에 따른 정관 중요사항 변경시 작성한다.

1. 정관변경사유

- (1) 2016.12.30.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금융위원회에 등록에 따른 변경
 - ① 정관 제1조(상호) - 상호변경에 관한 사항
 - ② 정관 제2조(목적) - 사업목적에 관한 사항
 - ③ 정관 제31조(이사회 의결사항) - 이사회 의결사항에 관한 사항
- (2) 정관 제33조(대표이사) - 대표권 행사에 신중을 기하고,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2인 이상의 공동대표 선임이 가능하도록 조항 추가

2. 주요 변경내용

- (1) 2016.12.30.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금융위원회에 등록
 - ① 정관 제1조(상호)
 - “(주)마이퍼스트에셋자산운용“ 으로 상호 변경
 - ② 정관 제2조(목적)
 - “전문사모집합투자업” 사업경영 목적 추가
 - ③ 정관 제31조(이사회 의결사항) - 이사회 의결사항에 관한 사항
 - 조항 추가
 -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
 -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
 - 대주주·임원 등과 회사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
 - 내부통제기준·위험관리기준의 제정·개정 및 폐지
 - 자구수정 및 내용 명확화
 -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 - 회사의 해산·영업양도, 합병, 분할·분할합병, 조직변경,, 회사정리, 화의절차의 신청, 청산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
- (2) 정관 제33조(대표이사) - 조항④추가
 - ④ 당 회사는 이사회결의로서 2인 이상 대표이사로 하여 회사를 공동 대표하게 할 수 있다.

■ 첨부서류

- 1. 신구조문대비표 및 정관 각 1부
- 2.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1부